#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001 발의연월일: 2020. 12. 29.

발 의 자:신현영·고민정·김진표

박홍근 · 송영길 · 신정훈

오영환 • 유정주 • 윤건영

윤미향 • 윤영덕 • 윤영찬

이광재 • 이규민 • 이병훈

이수진(비) 이용우 호기원

홍성국 · 홍정민 의원

(2091)

## 제안이유

현행법 제40조는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의 대유행이 우려되면 예방 · 치료 의약품 및 장비 등의 품목을 정하여 미리 비축하거나 장기 구매를 위한 계약을 미리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코로나19 백신 구매 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이 규정을 근거로 개발도 완료되지 않은, 개발이 안 되거나 실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백신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하기는 어려움.

2009년 신종플루 대응 때에는 백신 물량이 남아 책임 문제가 거론 된 바 있으며, 2015년 메르스 대응 당시에는 방역에 나선 실무 공무원 들이 방역 실패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당한 바 있어 공무원들이 구매 계약금을 미리 지불한 백신이 개발에 실패해 국비가 낭비되었을 경우문책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의사 결정을 하기 어려운 현실임.

이에 기존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신종 감염병 등에 대응할수 없는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을 미리 구매 또는 공급받는 계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업무를수행한 공무원들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함으로써 담당 공무원들이 적극적인 백신 및 치료제구매 업무를 수행하게 만들고자 함.

또한 부칙으로 이 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개정 조항을 소급 적용함으로써 현재 진행 중인 백신 구매 계약을 적 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감염병 관리위원회의 역할에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추가(안 제9조제2항제8호의3 신 설).
- 나. 질병관리청장은 개발 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하여 미리 구매 및 공급 계약을 하고, 과실 없이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불 이익을 당하지 않게 함(안 제40조의6 신설).
- 다.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된 계약은 제4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인정함(안 부칙 제2조).

#### 법률 제 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에 제8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3. 제40조의6에 따른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제40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0조의6(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 ① 질병관리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하여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료제 구매 특례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이전에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에 대하여 체결된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은 제40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된 계약으로 본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생	제9조(감염병관리위원회) ① (현
략)	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	2
항을 심의한다.	
1. ~ 8의2. (생 략)	1. ~ 8의2. (현행과 같음)
<u> &lt;신 설&gt;</u>	8의3. 제40조의6에 따른 개발
	중인 백신 또는 의약품의 구
	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사항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제40조의6(생물테러감염병 등에
	대비한 개발 중인 백신 및 치
	료제 구매 특례) ① 질병관리
	청장은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하
	여 기존의 백신이나 의약품으
	로 대처하기 어렵다고 판단되
	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도 불
	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 중인 백신이나 의약품의
	구매 및 공급에 필요한 계약을
	<u>할 수 있다.</u>

② 제1항에 따른 계약 및 계약 이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이 그 업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없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처리한 경우 불이 익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